#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3. 28.(수) 09:32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김석진 상임위원 (1인)

#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2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1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님들께서 확인 중에 있으므로 차기 회의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공개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이스트소프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8-14-100)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이스트소프트웨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이스트소프트웨어, 이하 피심인이라 하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피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 제64조의3, 제76조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개요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에 따라서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17년 9월 2일부터 금년 1월 10일까지 KISA와 함께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9월 5일 포털·금융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비밀번호 변경 등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피심인에 대한 의견수렴은 2월부터 3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결과입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심인은 알약 등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보안업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알툴바, 알집, 알송 등 알툴즈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개발·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웹사이트 ‘알툴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163명이며 매출액은 약 ’16년 말 기준 205억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현황은 이용자 정보 약 699,000여건, 휴면회원 정보 149만여건, 총 2,189,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피심인이 운영하는 관련 서비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패스는 잊어버리기 쉬운 여러 웹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저장·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알툴바 서비스 로그인 시 이용이 가능하고, 이 알패스 프로그램은 금년 3월 28일 종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툴바는 웹브라우저의 부가 프로그램으로 알패스뿐만 아니라 즐겨찾기, 캡처, 마우스 액션 등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거나 이용자가 추천하는 기능만을 모아 배치한 도구 모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경로를 피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에 남아있는 접속기록, ’17년 12월 22일 경찰에 검거된 해커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경로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 사전대입 공격 관련

개인정보 유출경로입니다. 피심인의 DB 내 존재하는 2017년 6월 2일부터 9월 12일 기간 중 아래 <표> IP주소 대역에 대한 해커의 공격 접속로그 약 2억 261만여건의 접속로그를 분석한 결과, 전체 로그의 81%에 해당되는 1억 6,504여만 건이 접속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접속 성공으로 최소 522,532명의 계정이 해커에 의해 접속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거된 해커에 대한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는 미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계정정보 아이디, 비밀번호 등으로 자체 제작한 해킹프로그램 '알패스(Alpass)3.0.exe'를 이용하여 '17년 2월 9일경부터 9월 25일경까지 알툴바 서비스에 사전대입 공격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패스의 정보 유출 사항입니다. 해커는 피심인의 내부 시스템에 별도 침투하지 않고도 사전대입공격을 통해 알툴바 로그인 시 정상 이용자가 로그인한 경우와 같이 알패스 프로그램에 저작된 외부 사이트 주소, 아이디 및 평문화된 비밀번호를 화면으로 볼 수 있었으며, 이를 해킹프로그램 '알패스(Alpass)3.0.exe'를 이용하여 txt파일로 저장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요도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경 사전대입공격 관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심인 조사 과정 중 피심인의 소명을 통하여 알패스 서비스에 별건의 사전대입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피심인이 제출한 자체 사고 분석보고서 외에는 기타 기록이 부재하여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피심인의 자제 조사 경과 및 결과입니다. '16년 11월경 해킹이 의심된다는 이용자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피심인이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자체적으로 사고분석을 하였습니다. 사고분석 시에 '16년 8월부터 11월까지 로그 분석결과, 불상의 해커가 54개 ip에서 약 100만번의 대량 접속을 시도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알툴스 이용자 계정 총 214만여건 중 최소 384,758건의 계정이 부정 접속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 알패스 이용자는 25만여명이며, 알패스 등록정보는 약 1,370만건이 되겠습니다. 피심인은 '16년 11월 이용자 384,858명에게 비밀번호 변경안내 e메일을 발송하고서 다만 방통위나 KISA에 유출신고는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내역입니다. '16년 사전대입공격을 통해 최소 384,758명의 알툴즈 계정의 부정접속이 의심되며, 다만 개인정보 유출 관련 증거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17년 사전대입공격을 통해 최소 522,532명 알툴즈 계정 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되고 이 중 166,179명의 경우 알패스에 저장된 외부사이트 도메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총 25,461,000여건이 유출된 것으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패스 유출정보의 웹사이트 종류별 유출 계정 건수를 보면 포털이 약 1,010,000여건, 공공기관이 680,000여건, 가상통화 1,900여건, 금융기관 59,000여건, 통신 관련 200,000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피해상황입니다. 계정 정보 유출 이용자들은 1인당 평균 150여건의 비밀번호 변경 조치를 했어야 했으며, 중국 쪽으로 검거된 해커는 해커가 유출한 아이디·비밀번호로 포털사이트에 부정 접속해서 이용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범행에 사용할 서버 5대를 임대하였으며,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이용자 아이디로 접속해 2.1 비트코인을 절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위반사항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침입차단·탐지 시스템 설치·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피심인은 알약 등 백신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보안업체로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인가받지 않은 자가 사용자 계정 탈취·자료유출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를 체계적으로 탐지·차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를 이용한 침입탐지를 적용하고 정기적인 로그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유출탐지 차단 기능이 충족

되도록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 관련 위반행위입니다. '16년 11월 알툴스 서버로그를 자체 분석한 결과, 봇(Bots)을 이용하여 아이디·비밀번호를 대입하는 대규모 사전대입 공격이 있었으며, 해커가 알패스 서비스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취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 접속이 의심되는 계정의 이용자 약 380,000여명에게 단지 접속 비밀번호 변경 안내 e메일을 발송하였을 뿐,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 및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6년에 약 380,000명의 부정접속이 의심되는 계정 중에서 '17년에 비밀번호를 교체하지 않은 155,000여명의 이용자는 알패스 정보가 다시 유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자의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접근할 수 없고 단순히 이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을 뿐인 알툴스 웹사이트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의미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가 접속하는 웹페이지를 통해 DB 내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조회·수정·삭제 등 처리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침입차단·탐지 시스템을 운영하였다는 견해입니다. 오픈소스 기반의 침입탐지시스템, 리눅스 OS iptable 등 기본사양을 갖추어 적법하게 설치 및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트소프트의 이용자 정보 보관 규모, 또 알패스 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전문기업이 제공하는 침입차단·탐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고, 또한 단순히 침입차단·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설정 운영, 이상행위 대응, 정기적인 로그 분석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침입탐지 및 차단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여야 하는데 이를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 관련 '16년 11월 자체 사고분석 결과, 사전대입 공격에 따른 부정 로그인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로그인 횟수제한 등 보안 강화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입공격을 통해 다량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오용이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인지한 당시 상황에서, 위험요소에 적합하게 필요한 보안대책과 보안기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비밀번호 초기화·접속차단 조치를 하거나 봇을 이용한 공격 방지를 위한 캡처를 적용하거나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수단 추가 도입 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제출의견 및 검토의견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심인은 '16년 11월 해킹이 의심된다는 이용자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자체 사고분석 등을 통해 권한 없는 자의 부정접속이 있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1일이 지난 '16년 11월 19일에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만 하고, 방통위 또는 KISA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문가 자문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해서 위반했다는 견해와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가 나뉘었습니다. 주요 견해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리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경우 사전대입 공격 외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침익적 처분, 과태료 등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침해사고'에 해당될 수 있어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에 따른 침해사고 미신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보통신망법 해설서 및 <개인정보 유출대응 매뉴얼> 개정 시 '사전대입 공격', '명의도용' 등 부정접속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신고 기준 및 절차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밀번호 저장 프로그램인 알패스 내 '비밀번호 양방향 저장'과 관련하여 검토하였으나 이것은 일방향 암호대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조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평일 중앙일간지에 1회, 홈페이지 1주일 이상 공표토록 하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징금 부과안입니다. 부과근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특히, 피심인은 대표적인 보안업체로서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수집·보관 중인 수천만건의 이용자의 알패스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가 입게 되는 2차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어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피심인의 알패스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위반행위 관련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라 4억원 이하 정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및 고려사유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은 2억 8,0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적 가중·감경입니다.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은 기준금액 그대로 유지하되,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억 4,00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추가적 가중·감경입니다. 조사에 협조하여 해커가 검거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2,800만원을 감경하여 최종 1억 1,2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하고 특별히 가중·감경할 사유가 없어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회에 의결해 주시면 4월 중에 시정조치(안)를 통보하고 하반기에 시행조치 이행사항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 건은 인터넷의 보안업체가 해킹을 방지해야 하는 업체인데 오히려 해킹을 당한 놀라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 보안업체가 이렇게 허술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의견 주시지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피심인이 알약 등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는, 물론 법인은 유상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널리 알려진 소프트업체라서 그런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당 여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해명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피심인이 지난 2017년 1월에 1월 기준으로 보면 개인정보 보관건수가 200만명 이상입니다. 또한 피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인 알패스에 저장된 외부 사이트나 도메인, 아이디와 비번 등이 유출되어서 2차 피해가 일부 있었음에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2016년 매출액이 205억원에 달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보고한 대로 Snort, iptable, WebKnight 같은 침입차단 방지를 위한 무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전문기업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닌데 이것을 설치한 것으로서 자기들 책임을 다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심인 경영진의 부족한 개인정보 보호의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안전문기업으로 자질을 의심케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피심인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한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출될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엄격한 보안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안대로 행정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고한 대로 <개인정보 유출대응매뉴얼> 개정 때 대입공격이나 명의도용 사례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하여 부정 접속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기준과 절차, 강화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도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늘 꼼꼼하게 잘 조사하고 보고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당 기업은 국내에서 알약으로 대표되는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IT업체입니다. 저도 알약이나 알툴바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회원도 200만명 이상 된다고 했는데 이런 업체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또 제재 대상이 된다면 아마 일반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은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이것도 충분히 인정되고, 특히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도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컨설팅 제공을 통해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 이런 것들을 강화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들마저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들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또 그에 대해서도 대응이나 입장 소명하는 것들을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IoT, 빅데이터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필수적인 분야의 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하고 제재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위원회의 입장으로 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재수위도 적절히 잘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것은 인터넷 보안업체가 해킹을 당했다는 것은 다른 해킹보다 더 심각하고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보안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안업체이기 때문에 잘 하겠지’라고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업체와 마찬가지로 보안업체도 같은 선상에서 항시 저희가 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어서 업종별로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자율규제 대상사업자, 시행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토대로 한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율규제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자율규제 법령 정비 연구반을 구성·운영하여 법령 정비방안, 자율규제 체크리스트(안), 자율규제 시행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17년 6월부터 8월까지는 통신·쇼핑분야의 자율규제 참여 66개 사업자, 4개 협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체크리스트’ 배포 및 자율점검을 시범실시하는 등 자율규제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만족도가 77.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자율규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김성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자율규제 촉진과 관련된 예산 3억원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개인정보 자율규제 사례 및 관련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보통신망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규제 시행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업계의 자율규제 촉진·지원 및 체계적,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제29조의2 김성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자율규제단체 지정, 평가체계, 과징금 및 과태료 감경 등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 시행령 등 세부 규정을 금년 8월까지 마련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자율규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방통위, 전문기관인 KISA, 8개의 자율규제 협회, 단체 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각 주체별로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자율규제 정책수립 및 법제화 등을, 전문기관인 KISA는 자율규제 정책 지원, 평가체계 마련 및 운영,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각 자율규제단체 및 자율규제단체 협의회는 업종별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결과보고, 회원사 이행실태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규제 적용대상은 8개 방송통신·온라인 분야의 협회 회원사 530여개, 통신사 영업점 2만에서 3만여개, 쇼핑몰 판매자 100만여개 등으로 약 100만개 이상 사업자가 자율규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율규제 추진체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율규제 시행방향은 1단계로 자율규제단체(협회)와 회원사가 ‘자율규제 규약’을 제정하고, 2단계로 협회에서 회원사 간 협의를 통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로 각 회원사가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율점검’, ‘현장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기관 인증취득’ 등 시행계획에 따른 자율규제를 이행하고, 4단계로 협회에서 참여 회원사 대상 자율규제 이행여부 점검 및 미흡사항 개선조치 등 환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규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규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원칙, 회원사의 공통 준수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표준 자율규약(안)’을 금년 5월까지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표준 자율규약(안)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는 쇼핑·통신 분야에서 먼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규약을 제정하고 다른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통신분야, 쇼핑분야, 방송분야, 알뜰폰분야와 관련해서 자율규약 추진과 관련 사항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회는 업종별 서비스, 개인정보처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되 계획 수립 시에는 실행조직 및 재원, 판매점, 셀러 등 업종별 특성에 맞게 자율규제 방식, 활동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업종별 자율규제 시행계획 추진 현황을 뒤에 첨부한 세부 계획에 <붙임>으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통신분야는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통신 4사가 자율규제 8개 항목을 마련하여 금년 2월에 이미 협약을 체결했고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쇼핑분야, 방송분야, 알뜰폰 분야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규제 이행방안입니다. 자율규제는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율점검’, ‘현장컨설팅’, ‘개인정보 교육’, ‘전문기관 인증 취득’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자 자율점검 사항은 협회에서 회원사에게 업종별 맞춤형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회원사는 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자율점검합니다. 체크리스트는 아래 <표>에서 보시듯이 공통분야는 총 93개 문항으로 수집, 이용 및 제공, 보호조치, 파기, 권리보호 등 5단계로 구성하고, 맞춤형 분야는 쇼핑분야에 대해서는 쇼핑몰 및 판매자 전용 25개 문항, 통신분야는 통신사와 영업점 전용 25개 문항 등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로 작년에 마련하고 시범운영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율점검하도록 합니다. 협회는 자율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등 기업 스스로가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통신사 약 5,000여개, 쇼핑 수탁사 약 1만여개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고, 추후 대상 사업자 및 업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기관 등 현장컨설팅 사항입니다. 협회 및 전문기관이 통신영업점, 쇼핑분야 판매자 등 현장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통신사 판매점 등 500여개, 쇼핑 수탁사 3,000여개 이상 총 3,500여개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입니다. 통신영업점 및 수탁사 개인정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법규, 관리방법 등을 교육하고자 하며, 금년도에는 통신사 판매점 3,000여명, 쇼핑 약 2,000여명 이상 총 5,000여명 이상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자율규제 시행방식은 통신분야의 경우에는 현장컨설팅,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 쇼핑분야나 방송분야, 알뜰통신분야는 개인정보보호 인증 취득 등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세 사업자나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초기부터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할 수 있도록 Start-up Privacy Incubat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스타트업은 사업초기 대부분 비즈니스 확대 등에 집중하여, 개인정보보호 투자나 개인정보보호 의지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수준 자가진단, 검증·컨설팅, 개선조치, 관리 등 4단계로 실시하여 '18년도에는 스타트업 포럼에 가입한 사업자 '17년 12월 기준 178개 중 참여 신청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19년부터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년 1/4분기에는 전년도 자율규제 이행여부 점검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서 회원사의 자율규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인 KISA 심의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평가위원회에서는 협회의 자율규제 활동성과를 검토·평가하고, 미흡 시에는 협회에 개선 권고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 활성화 지원방안입니다. 자율규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교육자료, 점검·컨설팅 인력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율규제 참여 확대 및 유도를 위해 과징금 및 과태료 감경 관련 시행령/고시를 3/4분기 이내에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자율규제 참여단체나 기업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자율규제 참여 마크 개발·부여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4월부터 자율규제 운영체계 확정 및 제도개선연구반을 운영하고, 5월부터는 업종별 자율규제 시행 및 사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 온라인 자율규제 참여 협회·사업자와 선포식 등 홍보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연말까지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고시 등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그럼 올해 지원 방안 예산으로 된 것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전체 예산은 3억원이고, 이 중에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교육을 지원하는데 2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최근 가상화폐나 O2O 등 스타트 기업 등에서도 유출사고가 확산되고 또한 해커가 수십개 기업의 개인정보를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난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강화가 더욱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현재 390만개에 달하는 웹사이트와 앱을 관리·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사업자의 공동규제시스템에 해당하는 이러한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를 준비한 사무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사례와 행안부의 오프라인 분야의 자율규제 사례를 보더라도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위임한 자율규제 형태로 정부와 제도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김성수 의원님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부위원장으로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도 법 통과 즉시 기본계획에 따른 제반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고시 마련 등 관련 세부 규정(안) 준비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리가 자율규제를 위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자율규제 외에도 기존에 했던 컨설팅 지원이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버 구축비용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기존에 우리가 특히 군소업체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컨설팅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 예산들이 있습니다. 자율규제를 하더라도 기존 지원사업과 유기적으로 같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가도록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온라인상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다 점검하고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율규제로 기조를 삼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민·관의 협력시스템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 보면 간단한 그림 하나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특별히 잘 관리하시고, 특히 민간 부분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끌고 간다' 이런 생각보다도 민간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 건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체제 기본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은 우리가 꾸준히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계획 원안에는 동의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도 다루었습니다만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건이 수시로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보안업체가 해킹을 당하는 이런 사례들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다, 경각심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킹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고 시스템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다 면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건이 국제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카카오톡과 라인의 시스템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온라인 시대에는 거의 모든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일일이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지 않거나 해킹당하지 않도록 감독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 업종별로 협회를 통해서 자율규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보고에 나온 사항들은 그런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로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되고 우리 위원회는 이들 협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율조치를 위한 협조 시스템을 앞으로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4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16분 폐회 】